

해외수산정보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형구

북한의 근해어업, 원양어업, 양식업

북한의 연근해에서는 상업목적으로 800종 이상의 魚貝類가 어획되고 있고 그 중 640종이 海産이고, 160종이 淡水産이다. 海産 魚貝類의 거의 대부분이 동해측에서 어획되고, 어획량도 동해측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명태 자원은 북한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태 다음으로는 가자미, 도루묵, 청어, 대구, 회유성 어패류인 정어리, 멸치, 고등어, 오징어, 꽁치 등의 어획이 많고 또 갑각류, 해삼, 섬게, 해초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황해에서는 干滿의 차를 이용하여 定置性 어구를 설치해 힘들이지 않고 어획을 하고 있다. 황해에서 어류의 대부분은 海州 연안 및 新尾島 沿岸에서 어획되고 있고, 갈치의 경우는 황해 전역에서 어획하고 있다.

북한의 어선은 일반적으로 근해에서 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에 진출한 어선은 아주 적다.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은 '60년대부터 실시하여 신포, 천진, 金策의 수산기지로 부터 오호츠크, 태평

양북서부에 선단을 진출시켜 청어, 가자미, 대구, 연어, 방어를 어획하고 있지만 어획량은 극히 미진하다.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 앙골라 등과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조업을 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는 '74년 1월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90년에 러시아 수역에서 20만톤의 무상어획할당을 받았지만 동년 5월 북한旗를 올린 위장 일본 어선이 위법으로 연어·송어 조업을 하다 나포된 사건을 계기로 '91년 2월에 열린 어업교섭에서 북한에 제공했던 무상 어획 할당을 중단하고 대신 다른 국가와 같이 일정의 입어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만톤의 명태 어획할당의 소련의 명태와 북한의 청어를 상호 교환하는 조식으로 3만톤의 특별할당을 받아 '92년 이후 계속 유상 3만톤 무상 3만톤 총 6만톤의 할당을 받고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외화 부족과 석유사정의 악화로 원양어업을 비롯한 어선의 출어가 크게 감소하여 6만톤 할당량의 상당부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沿岸域은 자연적 지리적인 조건에서 볼 때 해양 양식업 개발에 적합하다. 특히 동해는 게, 가리비, 방어, 다시

마, 미역 등의 양식이 성하고 있다. 북한의 어획량은 FAO의 자료에 따르면 160만~170만톤이지만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84년 북한의 어획량은 300만톤으로 FAO 통계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측이 주장한 종류별 어획량은 명태 1,996천톤, 정어리 216천톤, 멸치 86천톤, 나가시즈 33천톤, 무척추동물 88천톤, 갑각류 11천톤, 해초류 700천톤 기타 海産種 453톤, 양식 담수어 110천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과 관련한 금후 일본 어업의 과제

지난 11월 20일 일본 미나토 신문에 “新世紀 漁業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수산회사·단체의 勞動組合인 水産研究會는 “보다 高度의 資源管理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21세기 일본어업에 해양법이 깊게 관련하고 있다. 앞으로의 어업정책은 해양법을 전제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① 해양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 시점 ② 해양법을 일본내 제도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③ 어획가능량(TAC)과 數量割當 ④ 해양법 체제의 주역을 논점으로 몇 회의 토론을 개최하여 토론회의 주요 논점을 정리한 내용을 신고 있다. 후쿠오카 현지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해양법 제정 등 수회에 걸쳐 잡지나, 신문 등에 실린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어업제도, 수산업이 나갈 방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지양하고 있는 어업 관리는 각국이 설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신들의 어획가능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TAC 설정 대상어종은 난획 등으로 자원을 고갈되지 않도록 현존하는 어업의 경제성과의 관련을 중시하며 적절한 관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U에서

는 이미 '70년대에 수산물의 共通市長 제도를 발족시키고, 그후 '81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여, 어업의 합리적 발전의 촉진, 어민에의 정당한 보수 보장, 시장의 안정,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공급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과당경쟁·과잉투자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TAC 설정을 위해 정부는 대상어종의 생태와 어획량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어종에 따라서는 수년 혹은 수십년 장기간에 걸쳐 생물적 자원량이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반복하는 어종이 있다. 이러한 양상에 현재 경쟁하고 있는 어업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마치고 있는가 적정한 TAC 설정이 가능한가를 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TAC가 어선간의 어획경쟁이나 과잉설비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업 체제에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AC가 설비된 경우 그 나라가 정한 어획가능량 전부를 어획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협약 등의 결정으로 어획가능량의 잉여분을 타국이 어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주변은 자원의 악화로 인해 자원 잉여가 발생할 것인가 의문시되며, 일본 주변의 TAC 설정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법은 마치 세계 바다의 헌법과 같다. 결정된 법은 지켜지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국제어장에서의 위법 조업 문제나 일본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어업문제 등을 생각할 때 새롭게 설정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적절한 자원관리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 광대한 해양에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국 어업자 및 어업조직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해양법을 지켜가는 대전제가 된다.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검

색만으로는 잘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예를 들어 일본내에서는 관계 어업이 국가의 위촉을 받아 지역에 따라 새로운 자원관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외에 전문적인 어업관리자를 배치해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등 어업자 및 어업자 조직은 중앙, 지방의 행정과 하나로 된 협력체제 확립이 중요하다. 또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동아시아 각국의 어업자간에 생기는 트러블 등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업자가 광범위하게 연대해 민간협정을 맺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경제수역의 생물 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주관적 권리, 관리권 및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관리형 어업의 구축을 어업 정책의 기본 시책으로서 전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해양법 협약을 비준, 어업에서 200해리 체제 확립을 하여 어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때 동해와 같은 準閉鎖性 수역에서는 경제수역선을 설정한 후 일정의 연안수역과 정착성 자원을 제외한 準公海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크로파리슴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관계국간에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해양 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계국 어업자 연구자가 협력해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일본어업이 목표로하고 있는 자원관리 방법은 지역 어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협, 어업자 조직에서 어장·어구·어법·漁目 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실시에 있어서는 어업자 상호의 자주관리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어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지속적 생산 유지를 위해 생태나 자원량에 적합한 각종의 제한과 규제를 실시, 자원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으로부터의 쌓아올린 경험에 의하지 않고

나라의 행정, 연구기관, 중앙 심의회의 의견으로 어획가능량을 설정해 조업제한과 관리를 하려는 생각은 일본의 어업 상황에 비추어 볼때 상당히 무리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해양법에 기초한 자원관리에서 예를 들어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꽂치에 대해서는 각각 일정량의 어획가능량이 설정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당해 어업의 조업은 중단된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어선에 의한 어획고의 격차가 크고, 채산점을 하회하는 어획밖에 할 수 없는 경영체가 생긴다. 이러한 어선의 경영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어리, 명태와 같이 자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어업에는 전년도보다 낮은 TAC가 설정되어야 하고, 당연히 이것에 맞추어 어선수의 감소 등이 필요하지만 감선과 휴업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신체제 아래서 어획부진 문제 등에 관한 보상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별기금을 설치할 것인가? 공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대책 등을 검토해, 빠른시일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종은 TAC를 매년 증가시키지만 그 경우 어선수 증가에 대한 허가·인가 등에 관해서는 현행 관리방식과 관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서양 참치류 보존위원회(ICCAT) 제14차 특별회의

'95.11.10~11.17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회의에서는 ICCAT의 참다랑어 보존 관리 조치 효과를 훼손시키는 비가맹국인 파나마, 온두라스, 베리세 3국을 특정하였다. 또 대서양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의 어획을 급증시키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어 어획량 삭감 및 규제 조치의 준수를 요구하여 기지로 결의하였다.

맑고 푸른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 ◆ 인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맑고 푸르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 가정에서는 합성세제, 주방세제를 적정량 사용합시다.
 - 공장 및 사업장에서는 유해폐수, 폐유처리를 철저히 합시다.
 - 선박 및 해양시설 관리자는 기름취급, 폐유 및 폐기물처리, 오폐수 처리를 철저히 합시다.
 - 기상 악화시나 협수로 등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유의합시다.
 - 강이나 바닷가 유원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퇴가져 오도록 합시다.
- ◆ 기름, 폐기물 등 오염사항을 발견 또는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시는 일시 및 장소, 양과 확산상태, 오염원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해양경찰관서 전화번호

경찰관서	지역번호	민원실	해상범죄신고	해양오염신고	구난신고
해양경찰청	032	881-0112	885-0112	883-1846	883-0461
부산해양경찰서	051	646-7000	631-8631	632-5050	635-0112
인천해양경찰서	032	884-7000	883-0112	882-5050	883-0112
속초해양경찰서	0392	33-7000	31-0112	33-5050	32-0112
동해해양경찰서	0394	32-6705	33-0112	33-5050	32-0112
태안해양경찰서	0455	73-9003	674-5112	674-5050	675-0112
군산해양경찰서	0654	467-7000	467-0112	467-5050	467-5472
목포해양경찰서	0631	245-5050	43-0112	44-5050	42-0112
여수해양경찰서	0662	651-7000	651-0078	651-5050	651-0112
포항해양경찰서	0562	47-7000	47-0112	47-5050	42-0112
울산해양경찰서	0552	61-2858	61-2112	61-5050	60-0112
통영해양경찰서	0557	645-7000	43-0112	645-5050	41-4112
제주해양경찰서	064	52-7000	52-0112	57-5050	51-0112

바다를 오염시키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양경찰청